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8.2.18		16		
2	2009.1.22		17		
3	2012.4.30		18		
4	2013.1.22		19		
5	2014.1.17		20		
6	2016.5.12		21		
7	2018.3.1		22		
8	2018.5.8		23		
9	2020.1.15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제124조에 의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17.>

제2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8.2.1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2. 학칙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사항<개정 2016.5.12>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3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1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명

제4조 (평의원 자격) ①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전임교원 혹은 정규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 중인 자
2. 징계 처분 받은 자가 징계 해제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3. 휴직한 자가 복직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4. 대학의 주요정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경륜을 갖춘 자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로 졸업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④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외인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평의원 자격상실) ① 교원 평의원 및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2. 휴직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파견, 연구년
4. 중징계(감봉, 정직, 직위해제)

②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2. 휴학
3. 3개월 이상 교환학생 파견
4. 학칙에 의한 징계

제6조 (임원)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유고(궐위 포함) 시 의장이 임기 6개월 미만이면 의장을 대리하고 6개월 이상이면 제2항에 따라 임원을 새로 구성한다.

제7조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9.1.22., 2014.1.17., 2016.5.12>

② 평의원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선임시까지 평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제8조 (위촉)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된 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후보를 선정 교무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후보를 선정 사무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후보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후보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장이 위촉한다.

②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각 구성단위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교수회의) ① 평의원 추천을 위한 교수회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30>

② 평의원 추천을 위한 교수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제8조제1항제1호의 평의원 후보선출은 추천 해당인원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 제10조** (직원회의) ① 평의원 추천을 위한 직원회의는 정규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원 추천을 위한 직원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의 평의원 후보선출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 3 장 회 의

- 제11조** (회의) ①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 제12조**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평의원 중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임원선임 및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선임 등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2.18>

- 제13조** (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대외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한다.

제 4 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16조 <삭제 2014.1.17.>

제16조의2 <삭제 2014.1.17.>

- 제17조**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평의원회는 정관 제20조에 의거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평의원 중에서 1명을 추천한다.<개정 2008.2.18., 2014.1.17.>

제18조 <삭제 2008.2.18>

제19조 <삭제 2014.1.17.>

제20조 <삭제 2014.1.17.>

제 5 장 보 칙 <신설 2016.5.12.>

제21조 (개정) 이 규정은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2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0.(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